#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38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김선교・구자근・최수진

정연욱 · 김위상 · 강대식

윤상현 • 이헌승 • 김소희

김석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개발사업 및 도시화 등 농촌의 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이 그 지정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받는 등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일정비율 이하이고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을 추가함으로써, 실정과 필요에 맞게 농지를 운영하여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 항).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혐의를 하는 경우
  -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 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라.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이고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 전가치가 낮아진 경우
  - 마. 경지정리를 한 농업진흥지역의 외곽 또는 사이에 연접한 농업 진흥지역으로서 경지정리를 하지 아니한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 으로 편입하는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 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나.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과 해제) ① 시·도지사는 대통 과 해제) ① ----다음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 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 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 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신 설>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 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 는 경우에 한한다) 나.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 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 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

<신 설>

<신 설>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 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 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경 우로 한정한다.

라.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이고 주 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 전가치가 낮아진 경우

마. 경지정리를 한 농업진흥지역의 외곽 또는 사이에연접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경지정리를 하지 아니한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 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

 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

 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략)

 (2) (현행과 같음)